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959호(號) 1930년(昭和 5) 3월 17일 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12호(號)

조선국유철도 화물운임(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)에 대하여 다음[左]과 같이 특정(特定)함.

1930(昭和 5)년 3월 17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자작(子爵) 사이토 마코토(齋藤實)

- 1 품 명(品 名) 보통품(普通品)
- 2 발역항(發驛港) 오사카(大阪), 고베(神戶)
- 3 착 역(著 驛) 대구(大邱)
- 4 급종별(扱種別) 차급(車扱)
- 5 운 임(運 賃) 부산 착역(釜山著驛) 간(間) 1톤(噸: ton)당(當) 4원(圓) 57전(錢)
- 6 운임계산 톤수 14톤(噸: ton)

(運賃計算噸數)

7 조 건(條 件)

가 1구(口) 중(中)에 10품목(品目: 화물보통등급표[貨物普通等級表] 상[上]) 이상(以上)을 혼재(混載)할 것

나 각(各) 품목(品目)의 수량(數量)은 4천 킬로그램(斤: kg)을 초과(超過)하지 아니할 것. 단(但) 1품목에 한(限)하여 7천 킬로그램(斤: kg)까지 적재(積載)하는 것을 득(得)함.

다 화물(貨物)의 품명(品名), 수량(數量)은 상세(詳細)하게 기입(記入)할 것. 단(但) 각(各) 품명별(品名別)로 개수(箇數), 중량(重量)을 기재(記載)한 명세서(明細書)를 첨부(添附)할 때는 「...(1구[口] 중[中] 주[主]된 화물[貨物]의 품명[品名]) 외(外)」라 기입(記入)할 것.